

의안번호	2210650
의 회 인	민병덕의원
회 답 일	2025.6.18.
추계번호	25D3035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법인)	동남권산업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자본)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자본금은 정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출자함	의무규정
3	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	의무규정
4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공사의 사장,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1명,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산업은행 소속 임원, 금융산업 전문가 등 위원 12명으로 구성함	의무규정
5	안 제12조(임원)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을 두고, 부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	의무규정
6	안 제16조(이사회)	공사에 이사회를 둠	의무규정
7	안 제18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함	의무규정
8	안 제20조(업무의 범위)	공사는 ①동남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②동남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③국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공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업무, ④동남권산업혁신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⑤공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투자·융자 등의 업무를 수행함	의무규정
9	안 제25조(사채의 발행)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26조(차입)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금융회사,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29조(동남권산업혁신기금의 설치)	동남권의 신산업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벤처기업 육성, 산업구조의 재편, 동남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공사에 동남권산업혁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둠	의무규정
12	안 제3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①공사로부터의 전입금, ②정부의 출연금, ③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출연금, ④금융회사의 출연금, ⑤동남권산업혁신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⑥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함	의무규정
13	안 제31조(동남권산업혁신기금채권의 발행 등)	공사는 동남권 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동남권산업혁신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32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금은 공사가 관리·운용하며, 기금은 ①동남권 소재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②채권의 원리금 상환, ③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으로 사용함	의무규정
15	안 부칙 제3조(설립 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법인)	동남권산업 투자공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 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조(자본)		
3	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4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5	안 제12조(임원)		
6	안 제16조(이사회)		
7	안 제18조(직원의 임면)		
8	안 제20조(업무의 범위)		
9	안 제25조(사채의 발행)		
10	안 제26조(차입)		
11	안 부칙 제3조(설립 비용)		
12	안 제29조(동남권산업혁신기 금의 설치)	동남권산업 혁신기금	
13	안 제30조(기금의 조성)		
14	안 제31조(동남권산업혁신기 금채권의 발행 등)		
15	안 제32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동남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기 위하여 동남권산업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함)를 설립·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6조·제18조·제20조·제25조·제26조 및 안 부칙 제3조)
 - 안 제20조¹⁾에 따르면 공사의 업무는 동남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동남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국가와 동남권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동남권산업혁신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공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투자·융자 등임
 -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정부·동남권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출자한 자본금(안 제3조),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안 제25조), 공사의 차입금(안 제26조)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고, 공사의 설립 비용은 국가가 부담(안 부칙 제3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정안은 동남권의 신산업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벤처기업육성, 산업구조의 재편, 동남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공사에 동남권산업혁신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9조부터 안 제32조까지)
 - 안 제32조²⁾에 따르면 기금은 동남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의 대출, 자산

-
- 1) 제20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남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2. 동남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공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업무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제29조에 따른 동남권산업혁신기금의 관리 및 운용
 - 나. 공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투자·융자
 5. 그 밖에 동남권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②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대상, 방법, 범위 등의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 2) 제32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운용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동남권 소재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 가. 자금의 대출
 - 나. 자산의 매수
 -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 마. 사채의 인수
 -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의 매수, 채무의 보증, 신용공여, 사채인수, 출자 등을 지원하고,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됨

- 안 제30조³⁾에 따르면 기금은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정부·동남권 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사업, 기금의 규모, 재원 조달의 방식,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공사의 인력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필요함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공사와 기금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참고로,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산하 투자·융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정원·자본금·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1] 투자·융자 관련 공공기관의 정원·자본금·예산 예시

구분	한국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한국투자공사
목적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 지역 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 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2. 채권의 원리금 상환

3. 제30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기금의 관리·운용 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3) 제3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출연금

3.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출연금

4. 금융회사의 출연금

5. 제31조에 따른 동남권산업혁신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7.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8. 기금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구분		한국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한국투자공사
정원	임원	5명(기관장 1명, 이사 3명, 감사 1명)	8명(기관장 1명, 이사 6명, 감사 1명)	5명(기관장 1명, 이사 3명, 감사 1명)
	직원	3,369명(일반정규직 3,233명, 무기계약직 136명)	1,457명(일반정규직 1,222명, 무기계약직 235명)	327명(일반정규직 297명, 무기계약직 30명)
	소계	3,374명	1,465명	332명
평균 연봉 (2024 결산)	임원	기관장: 385,408천원 상임이사: 290,171천원 감사: 290,171천원	기관장: 338,090천원 상임이사: 242,291천원 감사: 227,711천원	기관장: 429,946천원 상임이사: 315,515천원 감사: 317,814천원
	직원	일반정규직: 114,659천원 무기계약직: 57,520천원	일반정규직: 85,474천원 무기계약직: 41,702천원	일반정규직: 123,738천원 무기계약직: 54,136천원
자본금	법정	30조원	—	1조원
	출자	26조 3,165억 5,900만원	—	1,000억원
예산 (2025 예산)	인건비	491,803백만원	114,606백만원	60,615백만원
	운영비	61,244백만원	26,972백만원	63,154백만원
	사업비	41,136,153백만원	5,840,687백만원	143,177백만원
	차입금 상환	—	5,330,000백만원	—
	기타	761,885백만원	752,641백만원	281,606백만원
	합계	42,451,085백만원	12,064,906백만원	548,552백만원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